

의안
번호

287.288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6. 04.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287.288호
- 다. 제출일자 : 2024. 05. 23.
- 라. 회부일자 : 2024. 05. 28.

2. 제안이유

가.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사회 참여활동 연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통합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8길 6(월곡동)
 - 규 모 : 576.58㎡(사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 3)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4)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나.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 위 치 : 성북구 한천로 708(장위동)
- 규 모 : 1,125.23㎡(전체 건물 연면적 1,641.73㎡에서 지상1층 제외)
 - 장위데이케어센터(2층) : 사무실, 간호실, 생활실, 물리치료실 등
 - 장위실버복지센터(3층) : 사무실, 강당, 교육실, 체력단련실 등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3)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4)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재가 어르신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이하“실버센터”라 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1일자로 ‘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체인 일광복지재단, 다원문화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현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5년('20.01.01.~'24.12.31) / (사단법인 일광복지재단 시설장 : 김경희)
- (소재지) 성북구 화랑로18길 6
- (시설규모) 연면적 576,58㎡ 지하1층/지상3층(1층 경로당 제외)
- (시설현황) 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2개 교육실 등
- (개관일) 2006.04.01.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사회복지사 4명
- (회원현황) 총 864명, 1일 이용인원 336명
- ('24년 예산) 309,137천원(전액구비)
- (운영실적)

(단위 : 개수)

구분	합 계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		건강지원		기타	
	1)프로 그램	2)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합 계	33	248	3	37	14	176	2	3	11	147	3	26

※ 프로그램 참여인원 : 8,811명

장위실버복지센터 현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5년('20.01.01.~'24.12.31) / (사단법인 다원문화복지재단 이사장 : 유무숙)
- (소재지) 성북구 한천로 708 ○ (개관일) 2005.03.30.
- (시설규모) 3층(사용층) 면적 537.196㎡, 지하1층/지상3층
- (시설현황) 사무실, 인터넷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사회복지사 4명(센터장 : 김승현)
- (회원현황) 총 885명, 1일 이용인원 254명
- ('24년 예산) 326,158천원(전액구비)
- (운영실적)

(단위 : 개수)

구 분	합 계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		건강지원		기타	
	1)프로 그램	2)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합 계	34	558	6	56	25	341	-	-	1	60	2	101

※ 프로그램 참여인원 : 8,207명(대면 5,259명, 비대면 2,948명)

장위데이케어센터 현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5년('20.01.01.~'24.12.31) / (사단법인 다원문화복지재단 이사장 : 유무숙)
- (소재지) 성북구 한천로 708 ○ (시설규모) 2층(사용층) 면적 539.46㎡,
- (시설현황)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세탁실 등
- (정원) 35명, ○ (개관일) 2020.07.21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14명(센터장 : 김승현)

합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14명	1명	2명	2명	6명	1명	1명	1명

- ('24년 예산) 62,900천원(전액시비)

(단위: 천원)

합 계	주간운영비	야간운영비	환경개선 및 복지지원	복지포인트
62,900	11,000	38,000	10,000	3,900

※ 2024년부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로 보조금 지원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 ‘실버센터’ 운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2)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제2항3)에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